

Article

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제도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에 관한 고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중심으로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606-791)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Legal Issues Relating to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Korea's Practice

Yong Hee Lee\*

Department of Maritime Law,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Abstract :**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have been used as a major means for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to regulate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also have evolved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cts as a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at purpose. Although the Convention includes more detailed provisions on man-made offshore structures, there are some legal issues regarding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 on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1958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UNCLOS by focusing on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regime governing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t next examines some controversial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from the regulation of man-made offshore structures in th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Korean domestic laws regulating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EZ or on the continental shelf. Finally, it closes by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e above examination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works.

**Key words :** artificial island, installation, structure,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1. 서 론

인류가 해양을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해양이용의 전통적이며 기본적 수단은 선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는 조선기술과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선박 이외에 ‘인공섬(artificial island), 해양시설(offshore installation),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이하에서 ‘인공섬등’이라 함)’ 등이 새로운 해양 이용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공섬등의 활용목적과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주로 해저석유 및

\*Corresponding author. E-mail : yhlee@kmou.ac.kr

가스의 개발 목적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 이외에도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에너지 생산,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항행 지원, 활주로 및 적하역, 방송통신, 주거 목적 및 군사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다(Elferink 2007). 또한, 활용 목적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그 숫자와 규모도 증가되어오고 있으며, 그 위치도 내수 및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하에서 'EEZ'이라 함),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항후에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소도서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섬등의 건설이 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Zou 2011).<sup>1)</sup> 우리나라도 이어도 및 가거초에 고정식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붕 해저가스개발을 위한 시설을 동해상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울돌목에 조류시험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으며, 풍력·파력 발전기술 확보를 위한 시범시설 등 다양한 해양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해양관할권분쟁이 촉발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어, 인공섬 건설의 법적 효과가 다시 한번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중앙일보, 2014. 6. 9, 19면).<sup>2)</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공섬등을 활용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규율하는 국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적 수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연안국과 해양이용국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EEZ 및 대륙붕에 위치하는 인공섬등에 적용될 국제법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존 국제해양법질서로 기능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은 1958년 제네바해양법협약체제에 비하여 EEZ 및 대륙붕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에 대한 규정을 비교적 자세히 두고 있으나, 세부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불투명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EEZ 및 대륙붕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에 대한 국제해양법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1958년 대륙붕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EEZ 및 대륙붕상의 인공섬등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내법 수용태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인공섬등의

용어의 정의, EEZ내 군사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가능성,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및 구조물의 제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 2. 1958년 대륙붕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상 인공섬등 관련 규정의 비교

### 1958년 대륙붕협약의 인공섬등에 대한 입법태도

1958년 대륙붕협약은 북해지역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해저석유 및 가스 개발시설을 주로 규율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제5조 한개 조문에서만 시설 및 장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5조 제2항은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타 장치 (installations and other devices)’를 대륙붕상에 건설하여 유지하거나 운영할 권리와 그러한 시설 및 장치 주변에 안전수역을 설치하고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안전수역 내에서 취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제5조 제3항에서는 안전수역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외측한계를 시설 및 장치의 최외측 점에서 500미터의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적의 선박으로 하여금 동 안전수역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제5조 제5항에서는 “그러한 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적절한 통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영구적인 수단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어떠한 시설도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제5조 제6항에서는 “시설 또는 장치나 그 주변의 안전수역은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 해로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연안국이 안전수역에서 유해한 물질로부터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시설 및 장치의 지위에 관해서는 제5조 제4항에서 “시설 및 장치는 비록 연안국의 관할권하에 있지만 섬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아니하며, 그 존재가 연안국 영해 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살펴볼 때, 1958년 대륙붕협약상 규율대상이 되는 시설과 장치는 오직 대륙붕 자원의 탐사

<sup>1)</sup>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소도서국가의 수몰에 대응한 인공섬등의 논의에 대해서는 Michael Gagain, 2012,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Artificial Islands: Saving the Maldives’s Statehood and Maritime Claim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 Oceans’”,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23(1), pp. 79-120 참조.

<sup>2)</sup>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 해양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Zou Keyuan, 2010, “The Impact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paratly Islands”, *South China Sea Studies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paper 참조.

및 개발에 관련된 것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과 장치 모두를 안전구역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안전구역의 설치목적은 동 시설과 장치의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륙붕상의 시설 및 장치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설정이나 경제계획에 어떠한 효과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행의 안전적 측면에서 시설과 장치의 설치 제한을 강조하고 있으며, 폐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의 완전한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 유엔해양법협약상 EEZ 및 대륙붕상 인공섬등에 대한 입법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과는 달리 EEZ와 대륙붕상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60조, 제80조, 제208조, 제258조 내지 제262조가 그에 해당되는데, 이런 규정들은 일반적인 인공섬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조사 목적의 시설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대륙붕상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60조의 규정은 대륙붕상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준용(*mutatis mutandis*)한다”고 규정하여 EEZ와 대륙붕의 인공섬등에 대한 제도가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80조).<sup>3)</sup>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에서는 연안국이 EEZ에서 항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 (b)호 (i)목에서 연안국이 항유하는 관할권의 하나로써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안국의 인공섬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6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EEZ내 인공섬등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인공섬등의 건설, 운용 및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연안국이 EEZ에서 직접 인공섬등을 건설할 권리와 EEZ내에서 인공섬등을 건설, 운용 및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인공섬의 경우에는 그 목적의 구분없이 모든 인공섬이 관할권의 대상이 되지만, 시설 및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과 둘째,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1항 (b)호와 ©호). 여기서 제56조에 규정된 목적이란 우선적으로 EEZ의 경제적 활용에 대한 사항과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보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이란 제56조에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연안국이 EEZ내 인공섬등에 대하여 관세, 재정, 위생, 안전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공섬등에 대한 접근, 인공섬등에서 행하여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 밀거래의 통제, 방역조치 등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항에서는 연안국이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안전구역(*safety zone*)을 인공섬등의 주위에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안전구역의 폭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섬등의 바깥쪽 끝점에서 500미터를 넘을 수 없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5항). 아직 안전구역의 폭에 대한 권한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아무런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안국은 500미터의 범위에서만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Nandan and Rosenne 1993). 이렇게 설치된 안전수역은 모든 선박이 존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6항). 여기서 지칭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기준’으로서 1987년 11월 IMO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A.621(15))를 들 수 있다. 결의의 명칭은 ‘해양시설 또는 구조물 주변의 안전수역 침범 방지조치(Measures to prevent Infringements of Safety Zones around Offshore Installations or Structures)’이다.<sup>4)</sup>

<sup>3)</sup>EEZ 이외에 대륙붕상 인공섬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이유는 연안국이 EEZ을 선포하지 않은 경우의 대륙붕과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적용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sup>4)</sup>결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선박으로 하여금 항행상의 주의에 관한 특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② 연안국으로 하여금 보다 적절한 절차와 안전조치를 채택하도록 하고, ③ 연안국으로 하여금 안전수역에 대한 규칙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기국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④ 기국으로 하여금 연안국의 위반통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안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다수의 권고를 구체화하였다. E. D. Brown, 1992, “The Significance of a possible EC EEZ for the Law relating to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and to Cables and Pipelin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3, p. 122.

한편, 제60조 제3항, 제5항 및 제7항과 제208조에서는 연안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인공섬등 및 그 주변 안전수역의 설치 위치에 대한 제한의무로서, 연안국은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항로대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인공섬등과 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없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7항). 다음으로는 공시의무이다. 먼저, 항행의 안전을 위한 공시(due notice) 의무로서, 인공섬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시 주체와 공시방법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알리는 영구적인 경고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안전수역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측 범위를 공시하여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3항 및 제5항). 또한, 폐기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및 구조물의 경우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MO가 작성한 기준에 따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때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1989년 10월 19일 IMO가 결의 A.672(16)을 통하여 채택한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 시설 및 구조물의 제거를 위한 지침 및 기준(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Removal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이다(Nandan and Rosenne 1993). 그러나 이때의 제거의무는 시설 또는 구조물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행의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 경우 일부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만이 제거된 경우에는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의 깊이, 위치 및 규모를 적절히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 및 구조물의 제거 시에는 어로, 해양환경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3항). 마지막으로 연안국은 대륙붕상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유엔해양법협약 제208조 제1항 및 제2항, 제214조).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와는 별도로, 유엔해양법협약은 EEZ 및 대륙붕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EEZ와 대륙붕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은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영해를 비롯한 어떠한 관할해역도 이 인공섬등으로부터 주장할 수 없다. 또한 EEZ 및 대륙붕상의 인공섬등은 그 존재가 인접 또는 대항국과의 영해,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

한편, 해양과학조사 목적의 인공섬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제258조에서 “해양환경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과학조사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및 사용도 그 해역에 있어서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에 관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해역에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해양과학조사행위의 하나로서 동 설비 또는 장비가 설치되는 해역에 적용되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적용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EZ 및 대륙붕에서 선박이외에 인공섬등을 활용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이 이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또한, 해양과학조사 목적의 인공섬등이 섬의 지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해, EEZ 또는 대륙붕의 경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펴본 제60조 제8항의 규정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앞서 제60조에서 살펴본 안전수역 관련 규정, 해운항로 불가침의무, 해상안전과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별 표시와 경고신호 유지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260조 내지 제262조). 또한, 외국인이 인공섬등을 활용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완전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249조 제1항 (g)호).

#### 1958년 대륙붕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상 관련제도의 비교

EEZ 및 대륙붕상의 인공섬등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1958년 대륙붕협약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핵심적 사항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공섬등의 활용 목적이 다양화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규율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강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내용과 안전수역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Elferink 2007).

먼저, 양 협약의 공통점을 적시하면 첫째, EEZ 및 대륙붕상에 설치되는 인공섬등에 대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공섬등의 설치에 따른 공시의무를 연안국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최대 500미터의 안전수역 설치권한 부여 및 동일한 설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섬등에 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로 인하여 해양 경계획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양 협약의 차이점으로서 4가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규율 대상 범위의 확대이다. 1958년 대륙붕협약은 오로지 대륙붕 탐사 및 개발 목적의 시설 및 기타 장치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으나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공섬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고, 장치 대신에 구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섬의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공섬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및 구조물의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과 환경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 해양과학조사 목적의 시설과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까지를 규율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김 1997). 둘째로는 인공섬 등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상의 시설 및 장치에 대하여 건설, 유지 및 운영에 대해서만 연안국에게 권리를 인정한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은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허가권뿐만 아니라 인공섬 등에 대하여 관세, 재정, 위생, 안전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연안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안전수역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는 연안국에게 시설 및 장비의 안전을 위한 조치권만을 인정한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은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권까지를 추가하여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선박에게 안전수역 존중의무를 부여한 대륙붕협약과는 달리 유엔해양법협약은 안전수역뿐만 아니라 그것에 가까운 거리내 수역에서도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네 번째는 포기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 및 구조물의 제거의무 완화를 들 수 있다. 1958년 대륙붕협약은 완전한 제거 정책적 입장에서 입안되었는 바, 제5조 제5항 후단에서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무조건적인 완전한 제거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완전한 제거를 의무화하는 대신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 제거나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제거 규칙(a qualified-removal rule)”을 채택하였다. 즉, 제60조 제3항에서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거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고 규정하여 1958년 대륙붕협약상 완전한 제거의 원칙을 수정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McDade 1987).

### 3. 유엔해양법협약상 EEZ 및 대륙붕상 인공섬 등 관련제도의 쟁점 검토

#### 인공섬 등 용어의 정의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공섬, 시설, 구조물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장치(device), 장비(equipment), 설비(facility), 플랫폼(platform), 해양인공구조물(man-made structures at sea) 등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용어를 여러 조문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용어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약 제1조 제5항에서는 해양 플랫폼 또는 인공

구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협약 제19조와 제21조에서는 설비와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60조와 제80조에서는 인공섬, 시설, 구조물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87조에서는 인공섬과 기타 시설을, 제94조, 제109조, 제111조, 제147조에서는 시설만을, 제125조 제128조, 제132조에서는 설비만을 언급하고 있고, 제194조 제3항 (c)호와 (d)호에서는 시설과 장치를, 제209조 제2항에서는 시설, 구조물 및 기타 장치를 언급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를 다루고 있는 제13장 제4절(제258조 내지 제262조)에서는 시설 또는 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 2010).

이와 같이 용어의 사용상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 또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애로를 발생시키고 있다(Rothwell and Stephens 2010). 즉, 무엇이 인공섬이며, 무엇이 시설과 구조물 또는 플랫폼 내지는 해양인공구조물인지 분명한 구별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규정된 조약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을 시도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Elferink 2007).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상호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의 해석상 연안국은 EEZ과 대륙붕에서 모든 인공섬에 대하여 관할권을 보유하는 반면에 시설과 구조물의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 해양과학조사목적,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 및 구조물과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양자간의 구별실익이 존재한다. 또 다른 구별의 실익은 제거의무의 적용범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섬의 경우에는 폐기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일 경우에도 제거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시설 및 구조물의 경우에는 제거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 적용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인공섬과 시설 및 구조물의 구별실익이 있다. 다만, 시설 및 구조물 상호간에는 양자에게 달리 적용될 사항이 부존재하여 구별의 실익이 법적으로는 크지 않다(Wegelein 2005). 오히려 시설 및 구조물과 장치, 장비, 설비 간의 구별실익은 안전수역 설치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sup>5)</sup>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공섬과 시설 및 구조물간에는 많은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해 이권에 위치하는 EEZ과 대륙붕에 설치되

<sup>5)</sup>유엔해양법협약의 경우 다양한 규정에서 시설 및 구조물과 장비, 장치, 설비 등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만 안전수역 설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는 인공섬등이 육지와 연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영해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조는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 시설(the outmost permanent harbour works)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해양시설과 인공섬(offshore installations and artificial islands)”은 영구적인 항만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태도에서 해양시설과 인공섬이 육지에 연결하여 건설된 구조물과는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lferink 2007). 셋째, 인공섬 뿐만 아니라 시설과 구조물 모두 섬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는 인공섬등에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공섬등이 항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는 점을 추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선박(ship 또는 vessel)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0조 내지 제93조를 비롯하여 협약 전반적으로 선박은 항행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규정되고 있으며, 해양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장에서도 분명하게 선박과 시설 및 구조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과 시설 및 구조물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up>6)</sup>

위에서 살펴본 구별실익을 고려하여 학술적 차원에서 인공섬등에 대한 정의가 시도된 바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기간중에 “시설”을 “인공섬과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installations’ includes artificial islands and structures)”으로 정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다(Nandan and Rosenne 1993). 인공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이중 Bouchez, Jarnicke 및 Jennings는 인공섬을 “인공적으로 설치된 구조물 또는 육지지역으로서,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저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고조시에 항상 수면 위에 있고 영구적인 것으로서 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Brown 1992). Elferink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섬의 조건중 “자연적으로 형성된”을 “인공적으로 형성된”으로 단순히 바꾸는 것으로 인공섬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Elferink 2007).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섬의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인공섬과 시설의 가장 큰 구별점인 제거의무 존재 여부를 규정한 제60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전자의 시도가 협약의 규정 해석상 인공섬의 정의로 타당해 보인다. 이에 반하여 시설 및 구조물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인공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

양이용에 사용되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만한 규모로 장기간 사용되는 해양인공구조물이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공섬과는 달리 시설 및 구조물은 반드시 수면 위에 항상 존재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선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Wegelein은 시설과 구조물의 구별실익이 크게 없음을 전제로, 시설의 경우 “특별한 기능 또는 목적을 위하여 동일지역에 위치한 설비 또는 복수의 설비(a facility or a grouping of facilities, located in the same vicinity, for a particular function or purpose)”라고 정의하는 한편, 구조물의 경우는 “복합물의 부분을 연결하거나 배치하는 것(an arrangement of and relations between the parts of something complex)”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egelein 2005).

### 군사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가능성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내의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제56조 제1항 제(b)호 (i)목에서 연안국이 모든 종류의 인공섬등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제60조 제1항 (b)호와 (c)호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의 범위를 협약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해석상, 연안국의 EEZ에서 타국이 ‘협약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 이외의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연안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해석의 결과로 특히 타국이 군사적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연안국의 통제없이 자유롭게 연안국의 EEZ에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협약 해석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다름은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의 성안과정에서도 노정된 바 있으며, 협약 채택 이후의 국가실행에 있어서도 그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시 인도가 대륙붕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Boczek 200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에서는 제77그룹이 1975년에 “어떠한 국가도 연안국의 동의없이 어떠한 군사 시설이나 장치 또는 어떠한 목적의 기타 시설이나 장치를 타국의 EEZ에 건설, 유지, 배치 또는 운용할 권리를 갖지

<sup>6)</sup>유엔해양법협약 제208조, 제209조, 제211조, 제214조, 제217조, 제219조 참조. 다만, 선박과 자항식 플랫폼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않는다”라는 제안<sup>7)</sup>을 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제안은 1978년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에 의해서도 재차 제안되었으나 해양강국들의 강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형태로 규정되었다(Nandan and Rosenne 1993).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시점에서, 브라질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그 주권 또는 관할권하에 있는 해양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건설, 운영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브라질은 이해한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국가도 연안국의 동의없이 EEZ 및 대륙붕에 어떠한 종류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선언을 1982년에 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선언은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에 의해서도 행하여 졌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모든 인공섬과 경제적 목적과 연안국의 EEZ 자원권(its resources rights)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의 건설,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통제권은 위의 종류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답변<sup>8)</sup>을 1983년 3월 8일에 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이후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의하여 반복하여 제기되었다(Roach and Smith 2012). 국내입법적 측면에서도 안티구아 앤 바부다, 북한, 피지,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사오툼 앤 프린시페, 수리남,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시실리 등이 모든 목적의 인공섬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 연안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취지의 입법을 하고 있다(Boczek 2009; Roach and Smith 2012).

이와 같은 해석상의 대립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안국의 동의없이 군사적 시설 또는 구조물을 타국 EEZ 또는 대륙붕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연안국은 이에 대하여 통제할 권리가 없는 입장의 기본적인 것이며 첫 번째 논거는 협약 규정의 엄격한 해석 결과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가 연안국에게 오직 경제적 목적, 과학적 목적, 환경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만 연안국의 통제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은 모든 국가에게 허용된다는 것이다(Churchill and Lowe 1999). 두 번째 논거는 전통국제법상 대륙붕에 군사적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1958년 대륙붕협약상에서도 오직 대륙붕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시설 및 장치에 대해서만 연안국의 권리를 인

정하였으며, 이러한 전통국제법상의 기초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Boczek 2009). 세 번째는 군함의 항행 안전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에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모든 국가가 타국 EEZ에서 항유할 수 있는 공해의 자유중 항행의 자유와 이 자유와 관련된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해양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Brown 1992).

한편,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먼저 연안국 EEZ에서 다른 국가가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sup>9)</sup> 즉, 모든 종류의 군사적 활동이 연안국의 동의없이 EEZ에서 수행될 수 없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군사적 시설 및 구조물을 연안국의 동의없이 EEZ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 (d)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해의 자유 중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가 동 협약 제58조에서 모든 국가에게 타국 EEZ에서 항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해의 자유에서 누락되었으므로, 타국은 당연히 연안국의 동의없이 EEZ에 인공섬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Brown 1992). 세 번째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구조물’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방해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연안국의 재량에 해당됨으로 연안국의 동의없이 군사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Boczek 2009; Brown 1992).

생각하건데, 조약의 해석원칙상 당해 조문의 문구 해석에 국한되기 보다는 당해 조약 전체의 문맥에 따라 조약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60조의 규정과 관련규정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60조의 해석상 연안국이 EEZ에 대하여 항유하는 권리 행사에 관련된 시설 및 구조물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의 시설 또는 구조물은 타국이 자유롭게 건설하여 운영 가능하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좁은 해석태도로 보인다. EEZ는 영해적 성격과 공해적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특별한 법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의 자유중 연안국의 EEZ에서도 타국이 항유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누락된 것중 하나가 바로 인공섬 및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 이러한 누락의 의미는 공해 자유중 인공섬 및 기타

<sup>7)</sup>UN Doc. A/CONF.62/C.2/L.82(1975).

<sup>8)</sup>UN Doc. A/CONF.62/WS/37(1983).

<sup>9)</sup>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는 이창위, 20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59(1), 119-140 pp. 참조.

시설 건설의 자유가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타국이 연안국의 동의없이 EEZ에서 군사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연안국이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구조물'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할권 규정이다. 이런 내용의 규정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상 당연한 것이며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군사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의 건설가능성 여부가 소위 잔존권리에 해당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잔존권리와는 다르게 연안국의 권리 행사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연안국 스스로에 있으므로 연안국의 판단이 우선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타국의 군사 시설 또는 구조물이 연안국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59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대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안국의 판단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군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권리 귀속 여부는 제59조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군사시설 및 구조물이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own 1992).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군사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 이외에 군사적 목적의 장치(device)는 허용되는 가하는 문제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비록 그 정의는 두고 있지 않지만 시설 및 구조물과 장치를 별개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수역 설치 가능성 등에서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군사적 목적의 장치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Boczek 2009). 이 문제는 잔존권리의 처리에 관한 문제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EEZ에서의 군사적 활동 허용 문제에 결부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Treves 1980).

####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및 구조물 제거의무의 범위

시설 및 구조물에 관한 1958년 대륙붕협약 규정과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간의 차이점중 하나는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및 구조물(abandoned or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or structure)' 제거원칙의 변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58년 대륙붕협약은 '완전한 제거의무'를 부

여한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은 '조건부 제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해저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던 시설 또는 구조물을 제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그 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해양환경에 방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안전한 항해에 대한 위협, 어구 및 어족자원에 대한 피해 발생, 어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의 제한 및 해양환경 오염의 위협, 잠수함 운용시 장애요소라는 군사적 측면의 우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McDade 1987). 따라서, 조건부 제거의무의 의미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건부 제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거의무 이행에 몇 가지 요건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제거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서 항행의 안전 보장, 어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익보다 항행의 안전보장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연안국이 제거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국제기준으로서 항행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인 IMO의 국제기준만을 적시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Brown 1992). 둘째는 제거에 관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채택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시설 또는 구조물의 경우 깊이, 위치 및 규모를 적절히 공시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국제기준의 고려의무'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국제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IMO가 1989년 채택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 및 구조물의 제거를 위한 지침 및 기준'을 의미한다.<sup>10)</sup> 그러나, 협약 규정은 국제기준을 "따른다(in accordance with)"라는 단어 대신에 "고려한다(take into accou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연안국이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제거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단지 국제기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치며, 구체적인 제거 기준과 그 방법은 연안국의 국내사정에 입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Brown 1992). 이러한 규정의 태도가 향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시설 또는 구조물로 인한 항행, 어로, 해양환경보호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MO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O가 채택한 지침 및 기준은 크게 일반적 제거 요건(general removal requirement), 지침(guidelines) 및 기준(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제거요건은 제일

<sup>10)</sup>IMO는 1989년 10월 19일 동 지침 및 기준을 IMO 총회 결의 A.672(16)의 부속서 형태로 채택하였다.



먼저 EEZ 및 대륙붕에 위치한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거하지 않거나 부분 제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1.1). 다음으로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대상으로서 ① 원래 설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후속된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이 지침 및 기준에 규정된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사유 발생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제거하도록 연안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침 및 기준 1.2). 또한, 제거하지 않거나 부분 제거하는 경우 그 사실을 IMO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지침 및 기준보다 더 강한 요건을 연안국이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1.3과 1.4).

지침부분에서는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부분제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2.1).

- (a) 수상 및 수중 항해와 기타 해양 이용에 미칠 잠재적 영향
- (b) 잔존부분의 손상 정도와 그것이 해양환경에 미칠 현재와 미래의 영향
- (c) 생물자원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
- (d) 잔존부분의 위치가 미래에 위치를 이동할 위험성
- (e) 비용, 기술적 가능성 및 제거에 참여하는 인력의 피해 위험성
- (f) 해저에 남겨지는 시설 및 구조물 또는 그 일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목적 또는 기타 합리적인 이유

특히, 항행의 안전과 기타 해양 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① 예측가능한 장애에 동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의 수, 종류 및 흘수, ② 동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 ③ 조류, 해류, 일반적 수리조건 및 잠재적인 극한 기후 조건, ④ 설정되거나 전통적인 해로 또는 항구접근로와의 인접성, ⑤ 항행보조시설과의 거리, ⑥ 상업적 어로구역의 위치, ⑦ 항행에 이용가능한 해로의 폭, ⑧ 국제항행용 해협 또는 군도수역내 국제항행로의 진출입로 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2.2). 이 밖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과학적 증거로서는 ① 수질에 대한 영향, ② 지질학적 및 수로학적 특성, ③ 생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종의 존재, ④ 기존 서식지의 종류, ⑤ 동 지역의 어업자원, ⑥ 시설 또는 구조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물질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 자체의 손상으로

인하여 동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또는 감염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2.3).

마지막으로 기준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시설 및 구조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는 ① 수심 75미터 미만 수역에 있는 하부구조의 무게가 4,000톤 이하의 시설 및 구조물,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것으로서 수심 100미터 미만의 수역에 있는 하부구조의 무게가 4,000톤 이하의 시설 및 구조물, ③ 국제항행용 해협, 군도수역내 국제항로, IMO가 채택한 항로상 및 부근에 위치한 시설 및 구조물이 제시되고 있다(지침 및 기준 3.1, 3.2, 3.7). 그러나, ①과 ②에 해당하는 시설 및 구조물은 연안국이 예외적으로 완전 제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로서는 기술적 불가능, 막대한 비용의 소요, 제거시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인명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 발생 등을 열거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3.5). 한편,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고 연안국이 결정한 경우에도 연안국이 동 시설 또는 구조물 상부로 가항수심 55미터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 위치를 해도상에 명기하여 표시할 뿐만 아니라 항해 보조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3.6, 3.8, 3.10, 3.11). 이상과 같은 요건 이외에도 1998년 1월 1일 이후 EEZ 및 대륙붕에 설치되는 시설 및 구조물은 완전 제거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건설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지침 및 기준 3.13).

#### 4. EEZ 및 대륙붕상 인공섬등에 관한 국내법 수용태도

우리나라는 1958년 대륙붕협약의 비당사국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을 1996년 1월 29일 비준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인공섬등에 대한 규정에서 연안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섬등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일치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EEZ 및 대륙붕에 건설되어 운영되거나 사용되는 인공섬등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국내입법을 분석하도록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법

1996년 우리나라의 EEZ 선포를 위하여 제정된 이 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EEZ의 설정과 그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공섬등과 관련하여서는 제3조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갖는

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2호 가목). 또한 제5조에서는 인공섬등에 대해서 외국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공섬등에 대해서도 EEZ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와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입법태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의 규정을 가감없이 수용한 형태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의 대상을 목적 여부에 대한 구별없이 일반적으로 시설 및 구조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EEZ내의 인공섬등에 대해서 EEZ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EEZ에서의 권리 이외에 인공섬 자체에 대하여 협약에서 연안국에게 인정하고 있는 관세, 재정, 안전, 위생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령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우리나라는 대륙붕에 관한 일반적 법률이 없는 대신, 대륙붕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1970년 제정하였다. 동 법상 인공섬등에 관한 규정은 제19조의 2에서 찾을 수 있다. 동 규정은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서, 해저조광권이 소멸될 때에는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를 수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상회복의무 이행 기간은 탐사권 소멸후 2월 이내 또는 개발권 소멸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11조). 다만, ①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와 ②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동 법 제19조의 2).

이상과 같은 입법태도에 비추어 볼 때, 대륙붕에 부존된 해저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또는 개발 목적의 인공구조물등의 설치에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탐사권 또는 개발권 부여시 일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권리 소멸시 완전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른 대체 목적이 있는 경우 당해 인공구조물등의 존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 자체로서는 완전제거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분제거에 대한 근거는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해양과학조사법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에 규정된 해

양과학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내법이다. 인공섬등에 대해서는 2개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EEZ 또는 대륙붕에서의 외국인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규정에서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하여 사용·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의 경우에는 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제4항 제3호). 또한, 제10조에서는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통의 의무중 하나로, ①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지를 부착할 의무, ②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주요항로에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 ③ 해양과학조사 종료 또는 중지시 설치·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이 법의 인공섬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유엔해양법협약과 일치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완전한 제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섬등의 법적 지위, 안전수역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인에 의해 설치되는 인공섬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인에 의한 인공섬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항행 안전을 위한 식별표지 등의 부착의무와 주요항로상 설치 금지의무도 설비 및 장비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을 뿐 인공섬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매립을 통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유수면에 EEZ가 포함되어 있으며(제2조 제1항 제1호), 인공섬등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섬등의 건설, 운영시 반드시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8조에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허가시에는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7항). 허가의 기간은 견고한 인공구조물은 30년, 그러하지 않은 인공구조물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호와 제2호). 한편, 제21조에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

여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인공구조물의 정의가 부재하여 명확한 범위 확정이 곤란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완전제거의무 면제사유가 국제기준보다 적고 부분제거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거명령대상에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것인 지는 분명하지 않다.

###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은 인공섬등의 건설등에 따른 항행 안전측면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대한민국의 EEZ 및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1항 제4호).

먼저, 이 법은 제2조에서 해양시설을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3장 제1절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인공섬등에 설치가 허용된 안전구역과 동일한 개념의 보호수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과 제2항). 이때 보호수역의 범위는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되 정하도록 하여 최대 5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또한 보호수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 밖에도 공유수면에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을 건설·부설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16항 다목, 제15조 제1항과 제2항).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하고, 동 해역에서 어로, 측량, 준설 등의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공섬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4장 제2절에서는 항행장애물의 처리에 대하여 자세한 제도를 마련하고, 항행장애물의 보고, 표시, 위험성 결정, 제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항행장애물의 범위에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및 구조물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에 대해서도 규율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적용대상해역에 EEZ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를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제17호,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 이 법의 용어 정의상 해양시설은 “대상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중 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선박의 개념에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에서 특이한 점은 인공섬을 규율의 대상에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고정식 플랫폼을 선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법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해상구조물의 안전에 관련된 법으로서,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과 ‘대륙붕 고정플랫폼 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동 법은 대륙붕상에 고정된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그 규율대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해상구조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항). 이러한 해상구조물에서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폭행·협박·상해·살인죄, 선박납치죄, 선박 등의 손괴죄, 선박 운항 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위험 물건 설치·탑재죄, 거짓 정보 전달죄, 선박 납치 등 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 협박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의 규정상 특이한 점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상구조물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해상구조물이라는 용어 안에 인공섬, 시설, 구조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지만 협약상 구별하고 있는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내법 수용태도의 평가

EEZ 및 대륙붕에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인공섬등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의 전반적인 입법태도를 살펴보면, 단일의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는 대신에 항행 안전, 자원 탐사 및 개발, 해양환경보호, 위법행위로부터의 안전 등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동 인공섬등에 행사가능한 관할권 분야별로 입법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부분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과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인공섬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관련 규정과 관련 국제기구의 지침 및 기준에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인공섬등의 대상이 상이하여 통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인공섬등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있어도 상호간에 상이하여 관련법률간의 유기적인 적용이 곤란한 상태이다. 또한, 인공섬등의 설치에 따른 제약과 제반 의무의 이행, 제거의무의 이행 등에 대하여 불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절한 준수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공섬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가 국내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법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동시에 개별적 법 개정방식 이외에 인공섬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1)</sup>

## 5. 결 론

오늘날 해양활동은 해운과 어로라는 전통적 분야에서 탈피하여 해양광물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레저 및 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박이 활용되고 있지만 점차 인공섬, 시설, 구조물, 장치, 장비, 케이블, 파이프라인 등의 이용 빈도와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해양이용수단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의 발전도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관련 국제조약이 그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당초 이러한 해양이용수단에 대한 쟁점은 인공섬을 해양관할권 주장의 기점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으나 이 문제는 1958년 대륙붕협약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되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이나 산호초 등에 인공섬등을 건설한 경우 이것을 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공섬으로 볼 것인지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해수면 상승과 연계하여 소도서국가의 관할해역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인공섬등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쟁점은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해석 및 적용상 충돌에 기인한다. 특히, 연안국과 해양이용국간

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EEZ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공섬등의 용어 부재로 인한 연안국 관할권 행사 범위의 불명확, EEZ 및 대륙붕에서 타국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권리의 범위,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처리 범위 등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불명확성은 국제조약법의 해석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연안국 국내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어의 불명확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인공섬과 시설 및 구조물의 관계는 해석상 구별의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시설과 구조물의 관계는 구별의 실익이 없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인공섬등과 장치, 장비, 설비 등을 여하히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점은 유엔해양법협약 인공섬등과 장치, 장비, 설비 등에 달리 적용하는 가장 분명한 구별점이 안전수역 설치 가능성에 있으므로, 안전수역의 설치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EZ에서 타국의 해양시설 및 구조물 설치 가능성문제, 특히 군사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가능성은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로 연안국과 해양강대국간에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연안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 가능성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시설 및 구조물의 경우에는 다른 것에 비하여 폭 넓은 연안국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법상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적용하되, 동 시설 또는 구조물이 연안국 EEZ 또는 대륙붕에서의 경제적 활동, 해양환경보호나 해양과학조사에 무관하고, 연안국 권리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 및 구조물의 제거의 문제는 완전한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비제거 또는 부분 제거의 결정이 비구속적인 국제지침 및 기준의 성격상 연안국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이다. 특히, 이 부분은 국제항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함으로 IMO를 통한 관찰과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연안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EEZ 및 대륙붕상의 인공섬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입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분야별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법에 의해 EEZ 및 대륙붕상 인공섬등에 대한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일치하게 입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 상

<sup>11)</sup>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4월 17일 법률 제34호로 “해양구조물 등에 관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간에 용어 사용이 일치하지 않고, 연안국 권리 행사를 위한 입법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며, 규제의 정도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포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인공섬등의 제거의무가 국제기준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법 시기와 주체가 각기 다른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조속한 법 개정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조약을 근거하여 인공섬등에 대한 국내 관련 법률을 종합적인 평가하고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는 독립입법을 통한 규율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병렬 (1997) 이어도의 법적 지위. 국방대학 교수논문총 11:239-262
- 김부찬 (2007)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법과 정책 13(2):1-21
- 이용희 (2010)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 32(4):427-437
- 이창위 (20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문총 59(1):119-140
- Attard, David Joseph, 1987,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350 p
- Boczek BA (1988) Peacetime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ird countries. Ocean Deve Int Law 19:445-468
- Brown ED (1992) The significance of a possible EC EEZ for the law relating to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and to cables and pipelin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cean Deve Int Law 23:115-144
- Churchill RR, Lowe AV (1999) The Law of the Sea. Juris Publishing, 494 p
- Galea F (2009) Artificial islands in the law of the sea. Ph.D. Thesis, University of Malta, 145 p
- Gagain M (2012)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artificial islands: saving the Maldives's statehood and maritime claim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 Oceans'. Colorado J Int Law Policy 23(1):79-120
- McDade PV (1987) The removal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conflicting treaty obligations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the new law of the sea: a case study. San Diego Law Rev 24:645-687
- Nandan SN, Rosenne S (199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040 p
- Papadakis N (1976)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artificial islands. Sijthoff, 277 p
- Papadakis N (1975) Artificial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it Policy Manage 3:33-39
- Pirtle CE (2000) Military use of ocean space and the law of the sea in the new millennium. Ocean Dev Int Law 31:7-45
- Roach JA, Smith RW (2012) Excessive maritime claim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925 p
- Rothwell DR, Stephens T (2010)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500 p
- Soons AHA (1982)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383 p
- Treves T (1980) Military installations, structures, and device on the seabed. Am J Int Law 74(4):808-857
- Wegelein FH (2005)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93 p
- Zou K (2010) The impact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paratly islands. In: South China Sea studies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pp 2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BC (2007) Legal status of Ieodo and its surrounding seas. Law Policy 13(2):1-21 (in Korean)
- Kim BR (1997) Legal status of the Ieodo. Fac J Nat Def Univ 11:239-262 (in Korean)
- Lee CW (2014) Conflicts over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between the maritime powers and the coastal state. Korea J Int Law 59(1):119-140 (in Korean)
- Lee YH (2010) Legal issues relating to construction of the Dokdo. Ocean and Polar Res 32(4):427-437 (in Korean)

Received Oct. 17, 2014

Revised Nov. 11, 2014

Accepted Dec. 7, 2014